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미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39

발의연월일: 2024. 6. 25.

발 의 자:김미애·박준태·김성원

강승규 • 김기현 • 김상훈

김예지 • 박정훈 • 배준영

유용원 • 박상웅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국가가 참전유공자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고, 참전유공자 상호 간 상부상조를 통 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6·25 참전유공자회를 설립하도록 정하고 있음.

그런데 대한민국6·25참전유공자회는 2024년 6월 현재 생존해 있는 회원이 4만여명에 불과하고 회원의 평균연령이 93세에 달해 몇 년 후에는 단체의 존립위기 상황에 도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.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위국헌신의 정신을 후손들에게 길이 보전하여 남기기 위해 대한민국6·25참전유공자회의 존속이 필요함.

이에 $6 \cdot 25$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대한민국 $6 \cdot 25$ 참전유공자회 회

원이 될 수 있도록 회원 자격의 범위를 확장하여 참전유공자와 그 유 족이 단체의 회원으로서 다양한 활동 수행 및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 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8조, 제19조 및 제24조). 법률 제 호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1항 중 "6·25전쟁 참전유공자"를 "6·25전쟁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"으로 한다.

제19조 본문 중 "6·25전쟁 참전유공자"를 "6·25전쟁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"으로 한다.

제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"6·25전쟁 참전유공자"를 각각 "6·25 전쟁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8조(대한민국6・25참전유공자	제18조(대한민국6・25참전유공자		
회의 설립) ① <u>6·25전쟁 참전</u>	회의 설립) ① <u>6·25전쟁 참전</u>		
<u>유공자</u>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	<u> 유공자와 그 유족</u>		
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			
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			
민국6・25참전유공자회(이하			
"6·25참전유공자회"라 한다)를			
둔다.			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		
제19조(회원의 자격) 제2조에 따	제19조(회원의 자격)		
른 <u>6·25전쟁 참전유공자</u> 또는	<u>6·25전쟁 참전유공자와 그</u>		
같은 조 제2호나목 및 라목에	유족		
따른 월남전쟁 참전유공자는			
각각 6·25참전유공자회 또는			
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			
수 있다. 다만, 「고엽제후유의			
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			
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대			
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회원으			
로 가입한 사람은 월남전참전			
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.			
제24조(사업) 6·25참전유공자회	제24조(사업)		
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			

다.

- 간의 상부상조를 위한 친목도 모
- 지증진 및 권익신장
- 3. <u>6 · 25전쟁 참전유공자</u>의 명 예선양 및 추모사업
- 4. 5. (생략)

- 1. <u>6 · 25전쟁 참전유공자</u> 상호 1. <u>6 · 25전쟁 참전유공자와 그</u>
- 2. <u>6 · 25전쟁 참전유공자</u>의 복 2. <u>6 · 25전쟁 참전유공자와 그</u> 유족-----
 - 3. 6 · 25전쟁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-----
 - 4. 5. (현행과 같음)